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협회 조사부

미국

사법성, 로케트 마팅사/노스로프 구라밍사의 합병저지를 위해 제소

미국사법성은 로케트 마팅사(이하「로케트」라 한다)가 노스로프 구라밍사(이하 「노스로프」라 한다)의 취득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 위싱턴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본건 합병은 연방정부가 제소한 개별안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된다. 사법성의 고위 관료는 「이 합병이 승인되면 미국 군대의 군용기용 레이더, 잠수함 및 함선용의 소나 및 미사일 공격에서 조종사를 지키는 전자전투 시스템을 포함한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이나 그 구성부품의 생산에 따른 경쟁과 기술혁신에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합병은 납세자에게 손해를 주는 동시에 병사를 수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에서 경쟁을

빼앗게 된다. 우리는 어떠한 군수산업의 합병도 우리 병사의 생명과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자넷 리노(Janet Rino) 사법성장관은 언급하였다.

「이번 합병건은 지금까지의 합병 중에서 최고로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시장간에 상호 관련된 문제가 많은 합병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문제는 최근 군수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통합의 결과(out-growth)이다」라고 윌리엄 코헨(William S. Cohen) 국방장관은 언급하였다.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입하는 데 경쟁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합병은 이미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군수산업에서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가 방위에 극히 중요한 많은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감퇴시키고, 나아가서는 군에 공급하는 군수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조엘 크라인(Joel Klein) 반 트라스트 국장은 보충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들은 본건 합병 심사에 따른

국방성의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 사법성과 국방성은 이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데 견해에 같이하고 있다」고 크라인 국장은 언급하였다.

로케트사는 노스로프사를 116억불에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 두 개사는 현재 군용기, 레이더, 소나 및 기타 전자시스템의 제조분야에서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 로케트사는 해군의 공격용 잠수함이나 이지스함의 주요 전자기기 및 F22와 F117 등의 군용기를, 노스로프사는 B2스텔스 폭격기와 E2C초계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1997년에 로케트사의 총매출액의 70% 및 노스로프사의 총매출액의 80%를 미군부에 판매하였다.

워싱턴 연방법원의 소송에서 사법성은 본건 합병이 고성능전술전략항공기(Advanced tactical and strategic aircraft), 조기 경계형 항공레이더시스템(Airborne early warning rader systems), 소나 시스템 및 조종사에게 위기를 경고하고 그 위기에서의 대응을 보조하는 몇개의 대응시스템(Counter mea-

sures systems)의 판매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케트사와 노스로프사는 전투에서 고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고성능 전술전략항공기나 군용기를 주로 공급하는 3사 가운데 2개사이다. 이들 항공기의 대부분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막는 스텔즈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 기술에서 최첨단을 이루는 것이 로케트사와 노스로프사이다. 단번에 많은 표적에 위치를 표시하고 탐지하는 레이더인 조기경계형 항공레이더시스템을 제조하고 있는 것은 로케트사와 노스로프사의 2사 뿐이다. 또한 로케트사와 노스로프사는 기뢰의 위치를 탐지하는 특정의 소나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다.

만약 합병이 이루어지면 로케트사와 노스로프사는 국방성의 물품조달 및 연구개발 예산의 약 28%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동사는 몇 개의 군용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동 시스템에 꼭 필요한 부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동 군용시스템의 주요 수주업자가 된다. 참고로 로케트사는 메릴랜드주의 법인이며, 베세스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동사의 1997년의 연간매상고는 약 281억불이다. 노스로프사는 델라웨어주의 법인이며, 켈리포니아의 로스엔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7년의 연간매상고는

92억불이었다.

■ 1998. 3. 23. 사법성 발표문

UCAR 인터내셔널사, 그라파이트 전극 국제카르텔사건에 대한 1억1천만불의 벌금지불에 합의

미국 사법성은 미국 최대의 그라파이트(graphite) 전극제조업자인 UCAR인터내셔널사(이하 「UCAR」이라 함)가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가격유지와 판매수량의 할당에 대한 국제카르텔을 결성하였다 하여 동사를 기소하였다.

UCAR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1억1천만불의 벌금지불에 응하려고 있다. 동 벌금액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 「UCAR은 반 트러스트법상 최고의 벌금지불에 합의하였다」고 자넷 리노 사법성장관이 언급하였다. UCAR은 공모자와 함께 경쟁을 억압·배제하였고 하여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UCAR은 타사와 함께 미국 및 기타의 지역에서 1992년 7월 이전부터 1997년 7월 까지 그라파이트 전극의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할당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철업자는 제품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그라파이트 전극의 구입에 비경쟁적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그라파이트 전극은 거대한 탄

소봉으로써 강철을 용해하고 정제할 때 전로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재이다. 미국 내에서의 동 제품의 총매상고는 1996년 5억불이었으며, 공모기간 중에는 17억5천만불 이상이었다.

UCAR은 델라웨어주 소재의 회사로서 코네티컷주의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내의 UCAR은 테네시주의 크라크스빌의 공장에서 그라파이트 전극을 생산하고, 미국 및 기타 지역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사법성은 현재 계속중인 그라파이트 전극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형사수사에서 이 사건은 두 번째의 기소가 된다. 일본기업의 미국 자회사인 쇼와덴코 카본사(Showa Denko Carbon, Inc.)는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900만불의 지불에 합의하였다. 카바이트/그라파이트 그룹(The Carbide/Graphite Group,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은 회사가 사전에 반트러스트 국으로부터 소추면제 보증(the Antitrust Divisions Corporate Leniency Program)을 받고 있음을 발표했다. 카바이트/그라파이트, 쇼와·덴코 그리고 이번의 UCAR가 이 사건의 수사에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본건 UCAR와 그 공모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원인행위는 다음

과 같다.

① 극동, 유럽,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그라파이트 전극의 가격 및 수량을 의논하는 회합 및 화합에 참가한 점

② 이러한 회합을 통하여 그라파이트 전극의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대해 합의한 점

③ 그라파이트 전극의 유지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점

④ 공모자간에 대략의 판매수량 할당에 합의한 점

⑤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미국을 포함하여 각 지역별로 타 회사가 지켜야 할 가격을 설정할 회사를 지정하는 데 합의한 점

⑥ 참가회사의 그라파이트 전극의 제조능력을 제한할 것에 합의한 점

⑦ 참가회사 이외에는 기술제공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점

⑧ 참가자 Code Name 사용을 포함하여 당해 카르텔의 은닉방법에 관하여 서로 논의한 점

⑨ 합의를 점검하고 동 합의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판매정보 및 고객정보를 교환한 점

⑩ 합의에 따라 가격의 공포, 가격견적을 한 점

동 공모기간 동안 그라파이트 전극의 고객은 물가상승률에 크게 상회하는 가격 상승을 감수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많은 기소를 하

였으며, 부과된 벌금의 합계는 2억3천만불에 가까운 액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수요자나 소비자에 대한 카르텔 행위를 하는 미국 및 외국기업을 소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Gray r. Sprattling 반트러스트국 차장(형사집행담당)은 언급하였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UCAR 및 SGL카본AG사(독일 뷔스바덴 소재)는 세계 2대 그라파이트 전극 제조업자이다. SGL 카본사(SGL Carbon Corporation, 노스캐롤라이나주 사를롯에 소재한 SGL카본사의 미국자회사)는 1997년 6월 5일에 가택수사를 받았다.

■ 1998. 4. 7, 사법성발표문

유럽 및 미국, 카르텔 저지 위한 협력에 합의

유럽연합과 미국은 지난 6월 4일 위법한 카르텔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협력을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의 집행부 성격을 가진 유럽위원회는 캐나다 반트러스트 당국과의 협정을 제의하면서 점점 세계화되어가는 경제에서 반경쟁적 관행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동 위원회는 일본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도 유사한 대화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유럽간 협정은 특히 미국 내지 유럽 중 어느 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 침해에 대하여 대처가 보다 용이한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당국은 조치를 유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다.

이러한 적극적 예방 협정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경쟁 문제에 관한 1991년 유럽-미국간 협정의 유사한 규정들이 작년 항공권 예약 시스템 운영업체인 Sabre Group Holdings Inc.가 유럽의 경쟁체제인 Amadeus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에 관하여 미국이 유럽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좀더 최근의 일로서는 유럽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기 있는 윈도우 소프트웨어에 인터넷 브라우저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조치를 자제하고 이 문제를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 맡겨 둔 사실도 있다.

이번의 새로운 협정은 적극적 예방에 기한 요청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 조건 및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 '98. 6. 5,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미 항소법원, 「윈도우 95」와 익스플로러의 연계판매 인정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3일, 하급법원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95」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제한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기념비적인 반트러스트 제소사건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승리로 기록될 만하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기있는 「윈도우 95」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넣어 판매해도 좋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금주에 판매를 개시하는 「윈도우 98」에서도 이와 동일한 관행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하여 법무부 및 20개주가 제소한 핵심 내용이다.

정부측 법률가들은 컴퓨터 제조업체로 하여금 「윈도우 95」의 일부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라우저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연계판매」에 해당하며 이는 동 회사와 정부 간에 1995년 체결되었으며 법원이 인가한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6월 23일 「윈도우 95」와 브라우저의 연계를 “진정한 통합”으로서 합법적이라고 결정하였는

데, 왜냐하면 별개로 존재할 때보다 통합된 하나의 제품이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확실히 일용 타당한 이득이 통합된 디자인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완수하였다”라고 항소법원은 기술하였는데, “실제상의 결론은 물론 재검토의 결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항소법원의 상기 결정은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Thomas Penfield Jackson이 지난 12월에 부과한 제한을 번복하는 것인데, 당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95」 또는 “그 후속제품”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게 동 회사의 브라우저도 함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는 또한 동 회사가 브라우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윈도우 버전의 판매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업담당 이사인 Bob Herbold는 「윈도우 95」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윈도우 98」 소송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가 제기한 이 두 소송은 동일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실망하였으며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을 위해 57페이지에 달하는 당해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에서 의 결정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보다 광범한 반트러스트 제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번의 반트러스트 제소에서의 증거와 법적 주장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가 연방 반트러스트법 위반임을 입증해 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성명을 통하여 언급하였다.

유타주의 상원의원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비판자인 Orrin Hatch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정부의 제소내용은 항소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윈도우와 브라우저의 연계판매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하였다. Hatch 의원은 “정부의 제소내용의 핵심은 좁은 범위의 연계판매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정 유형의 약탈적 행위도 사하였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4월의 항소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경쟁자를 위법하게 지배하지 않고서도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하급법원의 제한이 번복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윈도우 95」를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게 동 회사의 브라우저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F윈도우 95」를 이상하게 변경(브라우저를 포함하지 않음)한 PC는 우리가 아는 한 그 수가 매우 적다”라고 Herbold 이사는 언급하였다.

■ '98. 6. 23, The New York Times

**AT&T - TCI 기업결합,
반트러스트 심사 통과할 듯**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6월 24일, AT&T사가 480억달러로 Tele-Communications Inc.를 취득하겠다는 제안은 큰 어려움 없이 반트러스트 심사를 통과할 것이지만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사가 지역전화서비스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을 원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 소비자단체로부터 국회의사당의 보수적 공화당원에 이르기까지 - 본건 기업결합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용 전화사업에서의 진정한 경쟁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AT&T사는 6월 24일 아침 유선TV 대기업인 TCI사의 취득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AT&T사는 지역전화서비스와 고속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뉴욕에 소재한 반트러스트

전문 법률회사인 Constantine & Partners의 소속인 Lloyd Constantine은 “결국 이번 기업결합은 틀림없이 반트러스트 심사를 통과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국 법무장관인 Janet Reno는 당해 기업결합을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에서 검토할 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담당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FTC는 유선TV 회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그리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통신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당해 기업결합은 또한 FCC의 심사도 통과하여야 한다. 반트러스트 당국은 당해 기업결합이 새로운 독점사업 또는 시장력의 집중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FCC는 공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FCC 위원장인 William Kennard는 연설을 통해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감지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이득”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지역 전화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경쟁을 도입할 진정한 의미 있는 서약”이 있을 것인지를 문제시하였다.

워싱턴 D.C.의 한 법률가는 FCC가 AT&T사에 대하여 이번 유선TV 회사 취득을 가정용 전화사업에서의 경쟁을 위하여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서약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 보호단체 및 정치인들은 당해 기업결합이 지역전화회사간의 새로운 경쟁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대체로 낙관적이였다. “이는 잘 작동할 것이다”라고 소비자단체인 Media Access Project는 성명에서 밝혔다. “우리를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불러 달라. 지극껏 들은 바대로라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만,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반트러스트 소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Mike DeWine과 위스콘신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Herb Kohl은 당해 기업결합이 “더욱 활발한 경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몇몇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으며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청문회를 7월 7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이며 하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Tom Bliley는 AT&T사가 “드디어 설비에 기초한 경쟁을 진지하게 서약하려 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애리조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John McCain은 대변인을 통해 소비자가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 '98. 6. 24, Los Angeles Times

**FTC 반트러스트 제소 가능성으로
컴퓨터 칩 회사 취득 계획
취소돼**

2개의 컴퓨터 칩 구성요소 제조업체가 6월 25일 그들간의 기업결합 계획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하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당해 회사들 및 관계자들이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당해 기업결합이 미국 반트러스트법 위반이라고 투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Milpitas에 소재한 Adaptec Inc.는 콜로라도주 Ft Collins에 소재한 현대전자 미국법인의 자회사인 Symbios사를 7억7,500만 달러로 취득하려던 계획을 중지하였다. Adaptec사의 사장인 Grant Saviers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점을 보인 부분은 시장의 획정이었다." 비록 제소가 있더라도 승소할 것으로는 믿었지만, 당해 기업결합에 이미 6개월을 소모한 뒤라 Adaptec사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을 소송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해 발표가 있을 후 FTC는 그날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회의를 취소하였

다.

4인의 투표결과 - 1인은 공식 - 는 반트러스트 제소 쪽으로 결말지어졌을 것이다. 한 전문가는 FTC의 이번 조사는 컴퓨터 산업이 반트러스트 당국의 면밀한 감시하에 놓여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비록 자신들이 인텔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반트러스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Howard Morse는 말하였는데, 그는 FTC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현재 워싱턴 D.C.에 소재한 Drinker, Biddle & Reath 법률회사의 파트너이다. FTC는 지난 달 인텔사를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으며, 동 회사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컴퓨터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통해 독점력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daptec사와 Symbios사는 컴퓨터가 스캐너, 하드드라이브 및 CD 롬과 같은 주변기와 호환 되도록 하는 칩인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 호스트 제어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호스트 칩은 자료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RAID(미사용 디스크부분에 대한 예비적 자료저장)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 및 컴퓨터 서버에서 사용되고 있다.

Symbios사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유닉스 운영체제와 잘 호환될 수 있는 제어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들(FTC)은 기업결합된 회사가 SCSI 영역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는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획정한 것이다"라고 Saviers 사장은 밝혔다. Saviers 사장은 입·출력 기기 시장에서 단지 SCSI뿐만 아니라 PC 마우스, 모니터 및 키보드를 연결시키기 위한 USB(공통 시리얼 버스) 및 디스크 드라이브 간의 연결을 위한 IDE(통합기기 전자기술)를 비롯한 기타 다수의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월 발표한 당해 기업결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장이 확고한 FTC와 다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비록 우리는 FTC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시점에서 당해 기업결합을 중지하는 것이 양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결론지었다"라고 Adaptec사는 밝혔다. Adaptec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6월 30일로 종료되는 1/4 회계분기에 2,000만 달러의 유보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1995년 AT&T사는 Symbios사를 현대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Adaptec사도 당해 회사의 인수

희망업체 중 하나였다. 지난 겨울, Symbios사를 인수할 기회가 다시 찾아왔는데,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현금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현대는 Symbios사를 7억7,500만달러로 매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몇몇 회사들간의 인수 경쟁을 마무리지었다. 현대전자 미국법인은 한국 현대그룹의 일부이다.

Saviers 사장은 Adaptec사는 반드시 다른 기업 취득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Symbios사의 취득은 Adaptec사의 역사상 가장 큰 취득 건이었다.

■ '98. 6. 26, Los Angeles Times

EU

유럽위원회, Thyssen/Krupp 기업결합 인가

유럽위원회는 Thyssen AG와 Fried. Krupp AG Hoesch Krupp(이하 "Krupp사"라 함)간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하여, Krupp사가 Kone Oyj(이하 "Kone사"라 함)과의 기존의 연계를 제거하기로 서약함에 따라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연계의 단절로 인해 독립적인 4개 업체가 이 시장에서 계속 경쟁

하게 될 것이다.

원래의 기업결합 계획은 Thyssen사와 Krupp사가 전 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Krupp Thyssen AG에 양도하는 형식이었다. Thyssen사는 철강 및 기타 재료의 생산 및 가공,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제조, 기계공학, 컴퓨터 기술, 철강 및 기타 제품의 유통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Krupp사는 철강 및 기타 재료의 생산, 기계공학 및 기계공학적 부품 생산, 철강 및 기타 제품의 유통 영역에서 활동중이다. 평봉강(flat steel bar) 제품 영역에서의 Thyssen사와 Krupp사간의 활동 통합은 이미 1997년 11월 8일 유럽위원회가 인가한 바 있다.

동 위원회의 조사결과 당해 기업결합은 에스컬레이터 시장에서만 심각한 경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시장은 고집중 상태이다. Thyssen사 외에 유럽 내에서 단지 3개 업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들은 Kone사, Otis사 및 Schindler사로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동일하다. 에스컬레이터 사업부문을 Kone사에 매각한 이후 Krupp사는 더이상 이 시장에서 활동하지는 않고 있다. Krupp사는 Kone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후 Kone사 주식의 추가매입에 관하여 특권을 갖고 있고 Kone사 이사

회 구성원 1인을 지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두 회사간에는 경쟁을 자제할 것에 합의되어 있다. 기업결합이 신고된 대로 인가된다면 이로 인해 Thyssen사의 에스컬레이터 사업부문은 Kone사에 대한 Krupp사와 연계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된다. 심사절차의 진행중에 Krupp사는 Kone사의 이사회에 출석할 1인을 지명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Krupp사는 앞으로 Kone사와 협상을 벌여 경쟁 자제 조항을 폐기하고 Kone사 주식의 추가매입에 관한 특권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정이 있게 되면 Thyssen Krupp과 Kone사간의 연계는 단절될 것이며, 동 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장래에 독립적인 4개 업체들이 시장에 존재할 것임이 확실해졌으므로, 에스컬레이터 시장에 관한 경쟁상 우려는 적절히 해결되었다.

■ '98. 6. 3, 유럽위원회 보도

유럽사법재판소, 에어프랑스사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유럽연합의 기관으로서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사법재판소는 6월 25일 7개 유럽 민간부문 항공사로부터의 경쟁정책에 관한 역사적 제소를 받아들여

유럽위원회가 에어프랑스사에 대한 200억프랑(33억달러) 규모의 국가보조를 인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동 재판소는 유럽위원회가 국가 통제 하에 있는 당해 항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당해 판결은 유럽연합 소속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에 대한 최초의 진지한 법적 판단이었으며 이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관리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에어프랑스사는 차분한 반응을 보였으며, 동 판결이 보조의 "실체가 아닌 형식"을 근거로 하여 내려졌다고 주장하였다. 당해 보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6월 25일 100페이지에 달하는 당해 판결문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에어프랑스사의 성명은 국가보조를 허용하기로 한 유럽위원회의 1994년 결정을 "다시 유효화하기 위해" 동 회사가 모든 수단을 이용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에어프랑스사는 이 판결이 9월로 예정된 부분적 민영화 제안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연기될 수도 있다. 당해 제소를 행한 항공사에

는 British Airways, British Midland, SAS, KLM 및 Air UK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당해 국가보조가 경쟁을 왜곡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당해 국가보조가 경쟁을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프랑스사의 상업적 행위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16건의 특별 서약을 근거로 하여" 인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에서의 의혹은 근거없는 것이라는 것을 재판소에 납득시키려 할 것이다.

또다른 선택대안은 재판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당해 인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당해 국가보조에 대한 또다른 정당화사유가 필요할 것이며 에어프랑스사에 대한 새로운 조건 부과도 있게 될 것이다.

항소가 있다 하여도 당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못하는데, 이는 재판소로부터의 공식적 통지가 있는 후 2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지는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프랑스사 또는 프랑스 정부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재판소는 유럽위원회가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에어프랑스사

가 17대의 항공기를 신규 구입한다는 사실이다. 당해 국가보조의 인가조건 중 하나는 동 항공사의 총 운송능력이 확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프랑스사 항공기의 현대화 자금이 문제되는 당해 보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원될 것인지를 동 위원회가 검토하였는지가 불확실하다"라고 재판소는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동 위원회는 EU 외부에서의 항공노선에서의 에어프랑스사의 경쟁적 지위가 EU 내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주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 '98. 6. 26, Financial Times

일본

일본 공취위, 중학교 도서교재 가격카르텔에 대하여 배제권고

출판업자들이 중학교용 도서 교재의 최저가격 등을 결정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인 가격카르텔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정취위인위원회는 6월 2일 출판사 15개사에 대하여 앞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말도록 배제권고를 내렸다.

권고를 수락한 업체는 신가쿠사(新學社, 본사 교토시), 요시노(吉野) 교육도서(본사 오사카시), 쇼진사(正進社, 본사 동경) 등이다. 모두 일본도서교재협회

(일도협, 야나가와 카쿠지(柳川覺治) 회장)에 가입, 동 협회의 중학교부회의 회원이다. 이들 15개사는 중학교용 도서교재판매에서 시장의 약 7할을 점유하고 있다.

공취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15개사는 학생 수의 감소 등에 의한 매출의 저하를 막기 위해, 1997년도에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근거로 한 연습문제집의 최저납입가격 및 인상폭을 중학교부회의 대표자 회합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카르텔의 대상이 된 문제집 등의 시장규모는 1996년에 약 80억엔이다.

■'98. 6. 3, 아사히신문

일본 공취위, 기계보험에 관한 암묵적 카르텔에 대해 심판개시 결정

공취위는 6월 8일, 기계설비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기계보험 등의 보험요율을 둘러싼 손해보험회사의 암묵적 카르텔 사건과 관련, 동경해상화재 등 22개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심판」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손해보험 각 회사가 공취위가 부과한 합계 54억6,000만엔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고액

이다.

공취위의 조사에 따르면 손해보험 각 회사는 임의단체인 「일본기계보험연맹」(작년 9월에 해산)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동 연맹은 각 회사마다 동일한 보험요율을 대장성에 신청하기로 결정한다든지, 계약시의 요율산정의 「통일기준」을 설정한다든지 하여 각 회사의 경쟁을 방해하여 왔다.

이 때문에 공취위는 1996년 12월, 동 연맹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행한 후 올해 3월에는 동 연맹에 가입하고 있던 28개사에 합계 54억6,000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이번에 심판절차를 청구한 회사는 28개사 중 과징금액이 큰 22개사이다. 독금법은 소매업과 도매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카르텔을 실행한 기간 중(최대 3년간)의 대상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의 6%」로 정하고 있으며, 각 회사의 과징금액은 대리점을 통해 접수한 「최초수령 보험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동경해상화재가 약 13억9,000만엔, 스미토모(住友) 해상화재가 약 6억1,000만엔, 야스다(安田) 화재해상이 약 6억엔 등으로 산출되었다.

■'98. 6. 8, 요미우리신문

영업양수 건수 과거 최고 기록 - 공취위 1997년도 기업결합 동향 조사결과

공정취인위원회가 6월 12일에 발표한 1997년도의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신고건수는 2,174건으로 통산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영업양수 건수도 1,546건으로 통산 최고였다. 공취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권 및 점포시설 등을 동업자에게 양도하고 퇴출하는 회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합병 후의 새로운 회사를 총자산별로 보면, 10억엔 미만이 전년도의 1,048건에서 934건으로 준 반면에 1,000억엔 이상이 전년도 33건에서 44건으로 증가되어 대형 기업결합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영업양수는 10억엔 미만이 817건으로 전년도보다 32건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약 3할로 가장 많았으며, 건수도 전년도보다 54건 증가하였다.

■'98. 6. 13, 아사히신문